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9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서상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상열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전염성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에,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5호).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서상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69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기질 관리를 통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25년까지 공기질 등급 시스템을 마련하여 팬데믹 발생 시 장소 폐쇄 여부를 공기질 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10월 모든 학교 건물이 환기를 통해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감염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¹⁾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9월 그동안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춘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까지도 고려하는 등 학교 실내공기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서울형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습니다.²⁾

또한 교육부는 2022년 5월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는 필터 교체 및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³⁾

- 동 개정조례안이 코로나19이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당국의 학교내 공기질 관리 방안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은,

밀폐된 학교 환경에서 보다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를 통해 학교 실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나. 안 제4조제2항제5호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에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수립·시행한 ‘학교 실내공기

1) 보도자료: “실내가 바이러스로 가득”...미래 감염병 대응 위해 공기질 개선 ‘특명’(동아사이언스, 2023.3.8.)

2) 보도자료: 서울 학교 공기질 통합관리 위해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한다(조선에듀, 2020.9.3.)

3) 보도자료: 전국 학교에 바이러스 차단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5.18.)

질 관리 중장기 관리 계획’ 4)에는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23년 서울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감염병 유행 시기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이 수록되어 있는바,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내 감염병 관리까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4조제2항제5호에 대해 ① ‘기타’는 동 조제 제4조제2항제5호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중복됨 ②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은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성이 모호함 ③ ‘유관사업과의 연계’는 동 조제 제4조제2항제4호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과 중복됨 ④ 감염병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 6. 8.).

○ 그러나 교육청 의견 ①,②와 관련하여, 제4조제2항제1호 ~ 제4호의 직접적인 공기질 관리 방안 외에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공기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관리 계획 수립·시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같은 항 제5호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포괄사항을 규정하였다면,

4) 맑은 숨, 서울학교 만들기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 계획’(2021~2023)

5)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나 감염병 예방 관리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중복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교육청 의견 ③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관리 계획을 위한 감염병 예방 등의 유관사업은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감염병 관련 공기질 유지·관리 사업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현행 규정과 같이 공기질 유지·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수행 주체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교육청 의견 ④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동 관리 계획에 감염병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공기질 관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염병에 관한 사항을 관리 계획에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생 략)</p> <p>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5. (생 략)</p> <p>③ (생 략)</p>	<p>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